

#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경찰로 거듭나려면...

## 경찰의 필수적인 인권과제

2017년 6월 1일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 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진보네트워킹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4.16연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백남기투쟁본부,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경찰은 인권필수과제를 반드시 조속하게 실행하라”

### 인권필수과제 1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 ■ 현황 및 필요성

○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등 집권세력의 보위대 역할을 자처하면서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를 저질러 왔음. 단적인 예로,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경찰은 진상조사를 거부하였으며, 경찰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 오히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시위와 저항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경찰간부는 과거에 청와대로부터 승진으로 보상받아 왔음.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남경찰청장 시절에 밀양 송진탑반대운동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을 주도하였음.

○ 경찰이 그동안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반성과 한마디 사죄조차 없이 인권경찰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개혁의지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음. 경찰이 진정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경찰로 거듭나려면 먼저 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반성이 있어야 하며,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인권침해 관련 경찰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지 않은 채로 인권개선방안 운운하는 것은 그저 수사권을 받기 위한 핏수에 지나지 않을 뿐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함.

#### ■ 세부 실행과제

◆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함. 특히 아래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찰의 사과 및 책임자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용산 철거민에 대한 경찰특공대의 강제진압과 사망
-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 진압
- 제주 강정 해군기지반대운동 시민들에게 자행된 경찰폭력
- 밀양 송진탑 반대운동주민들에게 자행된 경찰폭력
-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감시 및 세월호 관련 집회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권력 행사와 백남기 농민 사망

◆ 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진상조사기구를 통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 진상조사에 따라 관련 경찰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 인권필수과제 2

###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 현황 및 필요성

○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경찰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의 문제는 그동안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이는 기본권인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거의 꺾어버리는 정도였음.

○ 경찰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남발해 왔으며, 차벽으로 청와대 방면의 행진을 차단하고 물대포의 살수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서슴지 않았음.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서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내리면서 과도한 물리력을 동원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음.

○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집회의 경우, 경찰은 세종로 사거리 북측 청와대 인근의 집회를 모조리 금지함으로써 오로지 ‘시민들이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청와대의 권력을 보호하는 데에만 주력하였음.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경찰이 보여준 행태였음.

○ 경찰은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서도 처음에 청와대 방면의 행진과 청와대 주변의 집회를 금지하였다가 법원의 허용결정이 나오면 마지못해 길을 열어주는 행태를 반복해 왔음. 심지어 2016년 12월 5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법원의 결정은 법원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청와대 방면의 모든 집회와 행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하였음.

#### ■ 세부 실행과제

- ◆ 집회에서 차벽과 물대포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
- ◆ 교통소통·사생활 평온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의 남발을 즉시 근절할 것
- ◆ 집회관리 등 모든 경찰직무집행시 국민들이 경찰의 신원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경찰은 신분명패를 채용할 것
- ◆ 법적 근거 없는 집회 채증을 금지할 것
- ◆ 교통감시용 CCTV로 집회를 감시하는 행태를 금지할 것

## 인권필수과제 3

###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감시를 근절해야 한다.

#### ■ 현황 및 필요성

○ CCTV통합관제센터는 현재 모든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주체는 형식적으로는 지자체장이지만 실제 운영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음. CCTV통합관제센터는 경찰에게 광범위한 감시의 권력을 쥐어주는 것임에도, 통합관제센터는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고 있음. 최근에는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도로상의 자동차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식별하여 차량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시스템(AVNI)도 구축한 바 있음. 이는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브레이크 없는 경찰감시’를 가져올 위험이 매우 큼.

○ 경찰은 그동안 대규모 집회·시위나 희망의 버스 등의 사회적 저항운동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허술한 규정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기지국수사, 실시간위치추적 등으로 참가자들을 감시하는데 주력해 왔음.

○ 뿐만 아니라, 경찰은 정보부서를 통해 일상적인 정보수집을 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사회운동 진영에 대하여 광범위한 사찰을 해 왔음. 이러한 사찰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고자 창설했던 일제 고등경찰 제도의 후신으로 존재해 왔음. 경찰은 범죄수사나 기타 긴급한 위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 시민사회운동 진영에 대한 경찰의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은 반헌법적·반인권적인 것이므로 당장 금지되어야 함.

#### ■ 세부 실행과제

◆ 법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CCTV통합관제센터와 AVNI를 당장 중단하고, 경찰감시의 허용범위에 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함.

◆ 기지국수사, 실시간위치추적 등 통신수사의 남용을 중단할 것

◆ 경찰의 일상적인 정보수집활동을 금지하고, 경찰 내 정보과 등 정보부서를 폐지할 것

## 인권필수과제 4

###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에 책임지는 경찰 -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의 실질화

#### ■ 현황 및 필요성

- 경찰의 활동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국 등 외국에서는 경찰의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경찰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형 통제기구를 활성화하고 있음.
- 현재 경찰법에 따라 경찰청 산하에 시민참여기구로 경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명목적인 기구에 불과하고 경찰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와 통제는 전무한 상황임. 경찰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정당성은 매우 취약하며, 권한도 미미함.
- 한편,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별로 경찰인권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 또한 유명무실한 들러리기구로 전락한지 오래임. 경찰은 인권개선조치의 하나로 인권위원회를 각 경찰서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해 아무런 통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대책이라고 말할 수 없음.
- 근본적으로 경찰은 청와대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 ■ 세부 실행과제

- ◆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시민참여에 의한 경찰감독기구로 위상을 정립할 것
  - 경찰위원회는 시민들(특히 지역사회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독립기구로 구성되어야 함.
  - 경찰위원회는 경찰직무감사권 · 시정요구권 · 청장임명동의권 · 해임요구권 등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함.
- ◆ 각 지방경찰청의 경찰인권위원회의 정책기능 및 인권침해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
  - 경찰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을 가져야 함.
  - 경찰위원회와 경찰인권위원회의 공조를 통한 인권침해 감독체계를 마련함.

■ 현황 및 필요성

○ 그동안 경찰은 국제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왔음. 단적인 예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집회에 서의 물대포 사용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를 하였고, 2016년 6월 발표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보고서에서 집회의 자유 보장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차벽, 물대포,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무더기 수사 및 기소 등 경찰의 조치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은 이러한 권고를 무시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음.

○ 이는 단지 집회의 자유의 영역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수사 및 기소,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형사규제, 유치장의 인권상황의 개선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 세부 실행과제

◆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하여 공표할 것

- 당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즉시 시정하고, 단계별 조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로드맵 제시
-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 권고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에 대하여, 그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